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1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정청래·한민수·신영대

한병도 • 이성윤 • 이병진

김현정 · 백승아 · 이언주

조 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.

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,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,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) 동물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(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) 동물의
	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
	동물에 관한 기록(추가기재・
	<u>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</u>
	기록 및 추가기재・수정 전의
	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
	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
	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
	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
	있다. 이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
	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
	<u>서는 아니 된다.</u>